

「평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3.11.11(월) 이정율의원외 2인

나. 회부일자 : 2013.11. 12(화)

다. 상정일자 : 2013.11. 12(화) 제1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이정율의원)

-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지원규모를 상향조정함은 물론 지원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다문화가족 영세농업인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홍금숙)

- 2012년 3월 9일 의원입법 발의로 제정된 본 조례에 대하여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소득농업인에 대한 지원방법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
- 현재 지원 대상 사업이 부엌개량, 화장실, 관정개발, 전기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대부분이나 이는 저소득농업인을

위한 농업분야의 실질적인 지원과 거리가 있어 농업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농기계 구입, 농업용 자재구입 등으로 지원대상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또한 현재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100분의 60이내 연간 한차례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

단위당 사업비를 500만 원 이하로 한정하는 것은 운영상 경직성이 있고 지원율과 지원액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들과 저소득 농업인들의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

단위당 사업비 상한선을 폐지하고 지원율은 70%, 지원액도 연간 7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.

- 아울러 지원신청이 많아 경합이 있을 경우 농지 소유면적이 2,000㎡이하인 영세농업인과 대부분 영세농가인 다문화가정 농가에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조항과 이중지원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저소득농업인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
- 본 개정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

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주거환경 개선”을 “농업생산성 향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농기계 구입(병해충방제기, 관리기, 부속작업기 등)
2. 농업용 자재구입(과수 지주목, 비료 및 농약 등)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제1항 중 “이상 500만원 이하인”을 “이상”으로, “60”을 “70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300만원”을 “700만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신청 농업인이 연간 예산액을 초과하여 경합이 있을 때에는 농지소유 면적이 2,000㎡이하인 농가와 다문화가정 농가를 우선 순위로 결정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이중지원 금지)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